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○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민사(시·군법원의 사건은 제외)·가사·행정 본안 소송사건을 당사자 등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예규에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로 민사(시·군법원의 사건은 제외)·가사· 행정 본안 소송사건을 추가함(안 제27조제2항제10호, 제11호, 제12호 각 신설)
- 3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 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안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법 제3조제1호의 법률에 따른 민사소송사건(시·군법원의 사건은 제외한다)
- 11. 법 제3조제2호의 법률에 따른 가사소송사건
- 12. 법 제3조제3호의 법률에 따른 행정소송사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 (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	제27조 (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
위) ① (생 략)	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	②
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는 다	
음 각 호와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<u>10.</u> 법 제3조제1호의 법률에 따른
	민사소송사건(시・군법원의 사
	건은 제외한다)
<u>〈신 설〉</u>	11. 법 제3조제2호의 법률에 따른
	<u>가사소송사건</u>
<u>〈신 설〉</u>	12. 법 제3조제3호의 법률에 따른
	<u>행정소송사건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사법지	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
연 락 처	(02) 3480-1416